

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
54-543

<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	-	2,869	-	2,869	-	-

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하여 **누적된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**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5조의2(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분담금관리자 및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**위탁기관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한 자연발생 이자분**

나. 세입 개요

- '17년말 누적 추정 잉여금 196,315백만원에 금융권 예치이자율 1.46%을 계산한 예금이자 소득 등 2,869백만원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-	-	-	-	2,869

- 1 -

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(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)

2018. 1.

국 토 교 통 부

법정부담금
59-593

<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법정부담금	-	31,708	-	31,708	-	-

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한 금액

나. 세입 개요

-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 및 책임공제료의 1%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으로 징수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-	-	-	-	31,708

기타 경상이전수입
59-596

<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기타경상이전수입	-	10,919	-	25,636	-	14,717

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(청구권 등의 대위) ①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(代位行使)할 수 있다

나. 세입 개요

- 무보험·행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시행 후 무보험·행소니 야 기자에 대한 구상 회수 금액
- * 위탁기관에 교부한 사업비의 결산 후 잔액 14,717백만원을 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구분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'13	'14	'15	'16	'17
수납액	-	-	-	-	10,919

기타 민간융자원금회수
75-754

<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	-	2,016	-	2,117	-	101

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2조(지원의 기준 및 금액) ①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2. 유자녀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지원
 - 가. 생활자금의 대출

나. 세입 개요

-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금으로 융자된 자금의 회수(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최대 20년간 분할) 상환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’13	’14	’15	’16	’17
수납액	-	-	-	-	2,016

세출(지출) 사업별 사업설명자료

사 업 명
(1) 의무보험전산망 (4641-30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자동차관리관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0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의무보험전산망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	-	2,427	-	2,427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'02.2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, 무보험 운행정보 제공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운영 지원 통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대국민편의성 제공

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85-852

<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		2018년		증감 (B-A)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-	196,315	-	172,205	-	△24,110

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한 금액

나. 세입 개요

-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하여 사용 후 누적된 여유자금

다. 최근 4년간 수납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’13	’14	’15	’16	’17
수납액	-	-	-	-	196,315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, 제45조, 제39조의 12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유지 및 관리
- ② 추진경위
 - '63.04 :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의무화
 - '77.12 : 중기관리법상 5종중기 및 이륜자동차 추가
 - '84.12 :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의무화
 - '92.04 : 만기안내,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 및 과태료부과 등 업무 신설
 - '92.07 : 건설기계중 타이어식 굴삭기 추가, 사업용차량 대인II의무화('91.12)
 - '95.12 : 보험개발원이 보험전산망 및 M/T를 이용하여 자료집적. 타사이전가입여부 및 등록번호사항 일괄확인
 - '96.02 : 전국시군구청 일괄전송 등 전산서비스 실시
 - '01.07 :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처분규정 시행
 - '02.02 : **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**
 - . 자료추출주기(월1회→3회) 및 처리기간 단축(2~3개월→1개월)
 - . 검사기관 등 정부 전산처리조직과의 연계
 - '03.08 : 임시운행 허가시 의무보험가입사실확인 의무화
 - .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성·운영 근거 신설(보험개발원 위탁)
 - '03.12 : SOFA차량 등록시 책임보험 확인
 - . 제10차 SOFA 특별대책반 회의에서 SOFA차량관리제도 일원화 방침
 - '04.12 : 전산망을 이용한 무보험운행자 정보 제공
 - '05.02 :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미가입자 통보업무 추가
 - '07.06 : 보험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 및 해지자료에 대하여 지침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마련
 - '07.12 :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시행
 - '08.09 :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사의 계약체결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
 - '10.02 : 자동차 신규등록시 의무보험가입관리 강화
 - . 임시운행자동차 보험만으로 신규등록 금지
 - '11.11 : 50CC미만 이륜자동차 가입의무화
 - '12.08 :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(6개월·2년), 번호판 영치 해제시 보험가입확인, 사법경찰 무보험차 단속권 부여(자배법 개정) 등
 - '13.08 : 보험개발원과 현대정보기술의 통합유지보수계약 체결(3년)
 - '15.02 : 건설기계 3종(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자주식 노면측정장비) 추가 의무화

- '16.08 : 보험개발원과 LG엔시스와 통합유지보수계약 체결(3년)
- * 보험개발원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하여 제안업체들이 제시하는 유지보수율 등 가격 10%와 기술 90%의 비중으로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최종 사업자와 서비스 조건 등 조율 후 3년간 장기계약 체결
- '16.12 : 분담금정보관리시스템 구축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8.1.1. ~ '18.12.31.
- 사업규모 : 전산망 유지보수(760백만원), 전산망 운영관리(1,667백만원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보험개발원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보유자, 자동차등록사업소, 과태료담당, 무보험운행담당 특사경, 변호관 영치·해제 담당, 사법경찰, 자동차검사소, 건설기계검사소, 손해보험회사, 공제사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
(2) 피해자지원(4641-30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		120	126
명칭	피해자지원기금		자동차관리관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1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피해자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	-	33,833	-	29,336	-	△4,497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
- ② 추진경위 : '00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개시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8.1.1. ~ '18.12.31.
- 사업규모 : 생활보조금 6,190명(14,856백만원), 장학금 1,950명(2,340백만원), 피부양보조금 1,500명(3,600백만원), 자립지원금 2,300명 (1,656백만원) 등 총 11,940명(22,452백만원)에게 경제적 지원 및 심리안정지원 서비스,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 시행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교통안전공단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
(3) 정부보장사업 (4641-30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자동차관리관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2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정부보장사업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정부보장사업	-	28,100	-	22,652	-	△5,448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정부보장사업 시행으로 불법차량에 의한 국민안전 보장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
- ② 추진경위 : '78년부터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시행, '85년 무보험차 피해자 지원 추가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8.1.1. ~ '18.12.31.
- 사업규모 : 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(부상·후유장애시 최대 1.5억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
- 사업 수혜자 : 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						
(4)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(4641-303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자동차관리관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3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생활지원 및 학자금(융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생활지원 및 학자금(융자)	-	4,560	-	3,360	-	△1,20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
- ② 추진경위 : '00부터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사망자 가정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8.1.1. ~ '18.12.31.
- 사업규모 :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자 1,400명(월 20만원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교통안전공단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						
(5) 국립교통재활병원(4641-304)					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자동차관리관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4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국립교통재활병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국립교통재활병원	-	2,708	-	3,553	-	84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아급성기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전문병원에서 집중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
- ② 추진경위 : '14. 10월부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재활환자의 재활치료 개시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5,612백만원
- 사업기간 : '18.1.1. ~ '18.12.31.
- 사업규모 : 전체 295병상 중 205병상 허가 (201병상 운영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가톨릭중앙의료원(위탁운영)
- 사업 수혜자 : 아급성기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교통사고 환자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	
(6) 통화금융기관예치금 (9701-971)	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자동차관리관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700	9701	971
명칭	여유자금운용	여유자금운용	통화금융기관예치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예산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6년 결산	2017년 예산		2018년		증감
		본예산(A)	추경	본예산(B)	추경	
국립교통재활병원	-	172,205	-	173,213	-	1,008

나. 사업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하여 누적된 잉여자금

2) 사업내용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
- ② 추진경위 :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'18.1.1. ~ '18.12.31.
- 사업규모 :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손해보험협회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 보유자 및 일반 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